

경주시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후원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즉각 중단하라!

-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의 적극적인 월성1호기 반대 활동 요청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일방적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 추진 중단
- 민간검증단 초청하여 32가지 안전개선 사항 설명회 개최
- 주민투표 실시 등 시민선택권 적극 보장

오늘 이 시각 경주를 비롯하여 서울, 부산, 울산, 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에서 월성1호기 폐쇄촉구 국민선언 전국동시 기자회견이 개최되고 있다. 문제의 월성1호기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국민선언 기자회견을 준비해준 전국의 시민사회와 국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국민선언은 7가지의 월성1호기 폐쇄 이유를 천명했다. 우리는 7가지 폐쇄 이유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몇 가지 사항을 더 전하고자 한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높아만 가는 우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노후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조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는 올 6월부터 원전주변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더욱 확대해서 적용한다. 중전의 원전 반경 10km에서 30km까지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한다. 월성원전의 경우 경주시청까지 직선거리가 27km인 만큼 이제 경주 시내권 전역이 월성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다. 이는 원전 사고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매우 바람직한 정책 변화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의 폐쇄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는 만일에 있을 원전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며,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의 폐쇄는 원전사고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와 함께 노후 원전의 즉각적인 폐쇄다. 후쿠시마에서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전이 모두 30년 지난 노후 원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노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검증단을 참여시켰다. 경주시, 경상북도,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민간검증단은 지난 1년 반 동안 월성1호기에 대해 32가지의 안전개선 사항을 도출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32가지의

안전개선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경주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민간검증단을 초청하여 그동안의 활동 내용과 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 받아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들을 수 있는 자리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 지금 진행되는 ‘월성1호기 폐쇄 국민선언 경주지역 기자회견’을 마련한 경주핵안전연대 대표단이 이미 지난 2월4일, 경주시의회 의장 면담, 경주시 담당국장 면담을 통하여 이와 같은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한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더 늦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일방적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월성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민간검증단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민의 선택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월성1호기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주민이 아무리 찬성을 하더라도 폐쇄를 해야 한다. 반대로 월성1호기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이 반대하면 폐쇄를 해야 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국가의 생사를 가르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반대하면,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충분히 그만둘 수 있는 정책 결정 사안에 불과하다. 독일, 대만, 필리핀,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의 원전폐쇄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다행히 최근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어 노후 원전을 수명연장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 경주시는 개정된 법안을 월성1호기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주민투표 실시까지 고려해야 한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술적 안전성 판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최근 원자력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 안전과 미래’에서 월성1호기의 기술적 안전성의 문제를 거론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기까지 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증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에 불과하다. 그런 만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선택권이다. 경주시는 우리 시민들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월성1호기 폐쇄촉구 국민선언을 마련한 전국의 시민사회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경주시와 시의회가 우리의 요구를 깊이 수용하고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2.9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경주지역 참가자 일동

월성원전1호기 폐쇄하여,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지난 1월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30년 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 10년 수명연장심사 안전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국민들은 월성1호기의 안전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들 역시 월성1호기는 이제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전문가 들조차 월성1호기는 최신기술기준이 반영되지 않아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 다며, 공개적인 토론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술기준 만족’, ‘평가기준 적합’을 주장하며 2월 12일 심의에서 수명연장 승인을 표결에 붙여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원 전의 안전성, 전력수급, 경제성, 주민의 수용성, 국민여론 등 어떤 것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의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그 혼한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았습니 다. 오히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1회 회의를 2회로 늘려 월성1호 기 수명연장을 빨리 결정하는 데만 신경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볼 때,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 안해도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공급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월성1호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도 되지 않습니다. 현재 2년이 넘게 가동이 중단되어 있지만 전력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구나 5년 후에는 전력예비율이 30%에 육박한다고 하니 더욱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2. 수명연장해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이 없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경제성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추진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최대 2,269억원 손해 보는 사업임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수명연장을 하든 안하든 손해를 보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명연장 결정도 되기 전에 사업자인 한수원이 5천6백억원의 설비개선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책임질 몫이지 수명 연장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3. 노후원전은 안전에 취약해 핵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모든 것은 다 수명이 있고, 오래되면 고장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은 단순한 고장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장발생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수명을 연장해 서 가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4. 중주국 캐나다도 수명연장을 포기했습니다

월성1호기는 캐나다에서 수입한 중수로 원전입니다. 중수로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사양길을 걷고 있습니다. 중주국 캐나다도 더 이상 중수로원전을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월성1호기와 같은 모델인 캐나다의 젠틸리2호기 역시 안전성을 담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서 경제성 문제로 최근에 수명연장을 포기했습니다.

5.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합니다

월성원전1호기는 중수로 원전이라 삼중수소라는 방사성물질을 다량 발생시킵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소변에서 실제 삼중수소가 34.1Bq/L(리터당 배크렐)까지 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의 원전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 미래세대까지 부담을 주는 핵폐기물을 다량발생시킵니다

월성원전1호기를 수명연장하는 문제는 단지 지금 세대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처리불가능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들을 핵발전소 임시저장고에 포화될 정도로 쌓아놓고 있지만 처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라서 경수원전에 비해 5배나 많은 사용후핵연료가 나옵니다.

7. 국민 다수가 월성원전1호기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71.2%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가 조사한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답변이 항상 우세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수명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를 연장해서 가동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세월호사고와 같이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안전을 무시하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합니다. 월성1호기의 폐쇄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부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엄중히 요청합니다.

2015년 2월 9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참가자 일동

□ 해외 신규 원전 폐쇄 사례

완공을 앞두고 폐쇄된 핵발전소			
국가	발전소 이름	중단 연도	비고
스페인	레모니즈 1,2호기 (Lemoniz 1,2)	198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PWR(가압수형), 각 90만kw •92% 완공 •ETA의 반대운동, 결국 국가에너지계획을 통해 폐쇄
	발데카벨레로스 1,2호기 (Valdecaballeros 1,2)	198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BWR(비등수형), 각 97.5만KW •각각 60%, 70% 완공 •국가에너지계획을 통해 폐쇄
오스트리아	츠벤펜도르프 1호기 (Zwentendorf 1)	197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BWR, 69.2만kw •건설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폐쇄 결정(50.47% 반대)
독일	SNR-300	199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증식로, 32.7kw •1985년 완공, 주정부의 반대로 가동중단 •1991년 공식폐쇄결정 이후 현재는 놀이동산으로 이용되고 있음
필리핀	바탄(Bataan)	198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PWR, 62.1만kw •완공된 상태에서 단층 등의 문제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폐쇄

-출처: 탈핵신문 2012년 6월 25일호, 이현석

□ 원자력안전법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p>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제6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제10조제2항·제5항 또는 제63조제2항에 규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할 때 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는 제10조제2항·제5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3항에 따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으려는 자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